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건물 -

고유번호 1801-1996-038044



[건물]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68-195 내제조표33207호

【 표 제 부 】 (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85년11월21일	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68-195	조표영제33207호 시멘트 블록조 스테이트및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69.46㎡	도면편철장 제260책제239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6월 09일 전산이기
2		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68-195 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64번길 17	조표영제33207호 시멘트 블록조 스테이트및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69.46㎡	도로명주소 2012년9월27일 등기 도면편철장 제260책제239장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소유권보존	1985년11월21일 제4514호		소유자 강기호 271106-***** 부산 영도구 청학동 68-195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06월 09일 전산이기
2	소유권이전	2013년10월31일 제33854호	2013년3월1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	소유자 최경자 400704-*****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64번길 17 (청학동)
3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3월17일 제1031214호	2025년3월17일 부산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	채권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110114-004536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, 10층

[건물]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68-195 내제조표33207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정(2025타경21642)	(당산동1가, 엠지신용정보빌딩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근저당권설정	2013년11월6일 제34633호	2013년11월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50,000,000원 채무자 최경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64번길 17 (청학동) 근저당권자 이경태 710115-*****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, 201동 904호(다대동,삼환아파트) 공동담보 토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68-195

열람용

관할등기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6년02월19일 21시09분11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801-1996-038044

[건물]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68-195 내제조표33207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최경자 (소유자)	400704-*****	단독소유	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64번길 17 (청학동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3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3월17일 제1031214호	채권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	최경자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1	근저당권설정	2013년11월6일 제34633호	채권최고액 금5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이경태	최경자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